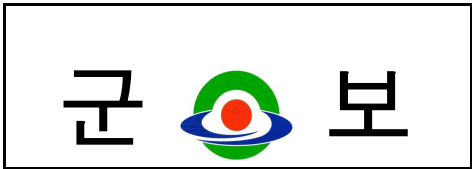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03호 2024. 2.1.(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4-14호)

공 고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227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예 천 군 수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개간)	예천	개포	가곡	785	4,900	2024.02.01. ~ 2025.01.31.	22,700	서 문 O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예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기금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가능 비율 조항 삭제

(안 제4조제3항)

나.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화(안 제5조)

다. 기금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KJ8210668@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9조로 하며,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및 실과소장 3명 이내

2. 위촉직 :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기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심의위원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 제목 “(통합기금의 운용심의)”를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전의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 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변경사항 등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중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이자) 군수는 예수금의 이자율을 예천군 금고의 이자율로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② (생 략) ③ <u>조성된 기금에서 한 회계연 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 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총액 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 합기금을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 천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에 별도의 계좌를 <u>설치하여</u> 예 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 ----- ----- ----- ----- <u>설치하되 이자 율이 높은 예금으로</u> ----- -----.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 의위원회의 구성) ① 통합기금 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 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u>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 여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u>

제6조(이자) 군수는 국·공채 이
 자율 수준, 금고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수금·융자금에 대한 이
 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
 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
 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 3분의 1이상이 참여토록
 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기획예산실
 장 및 실과소장 3명 이내

2. 위촉직 : 예천군의회에서 추
 천하는 사람 1명, 기금에 관하
 여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
 고, 심의위원회 간사는 예산팀
 장으로 한다.

제9조(이자) 군수는 예수금의 이
 자율을 예천군 금고의 이자율로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
 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등)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
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신 설>

5. (생략)

③ 심의위원회는 「예천군 재정
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재
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
행한다.

<신 설>

<삭 제>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
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
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
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신 설>

제8조 ~ 제10조 (생 략)

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예 천 군



1. 규칙명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예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기금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함.

3. 주요내용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
규칙 정비(안 제2조, 제4조)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KJ8210668@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운용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심의·의결”을 “운용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u>심의위원회</u>”라 한다)의 심의 . <u>의결</u>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u>심의위원회</u>”라 한다)의 심의 . <u>의결</u>----- -----.
--	--